

◎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57호**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2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**

1. 제정이유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1조의3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등을 정함

2.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을 규정함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일 까지 중소기업부장관(참조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udos@korea.kr
- 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- 3) 팩스 : 044-204-7369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: (044) 204 - 736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